

학교법인 명지학원 및 명지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1. 감사 개요

가. 감사기간 : 2021. 11. 15. ~ 11. 26. 【토·일 제외, 10일간】

나. 감사인원 : 22명(공인회계사 등 포함)

2.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유형별 지적건수

분야별	법인 및 재산관리	조직·인사	예산·회계	산단· 연구비	입시·학사	시설·물품	계
지적사항	4	10	4	5	6	5	34

나. 세부지적 및 처분 : “감사결과 처분서” 참고

감사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학교(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실명이 공개된 모든 학교(기관)가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명지학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	<p>상근이사 급여 지급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2017. 2. 결산일 기준 수입사업 회계의 부채(1,882억 상당)가 자산(1,852억 상당)을 초과하여 30억 상당의 자본이 잠식되어 있었으며 국세 체납액이 780억 4,428만원에 달하여 학교법인의 계좌가 과세 당국에 압류되어있음에도, 2017. 6. 26.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A을(를) 상근이사로 선출하면서 이사장에게 보수 결정을 위임한 의결 사항에 대해, 이사장은 위 A에게 보수 결정을 재위임하여 A의 전결로 본인의 급여를 월 1,000만원으로 책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A은(는) 2017. 9.부터 2019. 12.까지 28개월 동안 급여 합계 2억 8,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p>○ 경고(2명)</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명지학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	<p>법인 직원 특별채용 부당</p> <p>○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및 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인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며, 「학교법인 명지학원 정관」 제84조에 따르면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 명지학원 인사규정」 제7조의6, 제8조에 따르면 사무직원(일반직, 기능직)의 특별채용직원 임용시에는 사전 충원계획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며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학교의 검토와 교원(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2019. 11. 1. 사전 충원계획 없이 C을(를) 법인사무국 9급으로, 2020. 1. 13. 사전 충원계획 없이 A을(를) 법인사무국 2급으로 특별채용하고, 각각 특별채용일과 같은 날 위 C와(과) A을(를) ■■■ 대학에 전보함으로써 학교의 장의 제청, 학교의 대상자에 대한 검토 및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회피한 사실이 있음</p>	<p>○ 경징계(2명)</p> <p>○ 경고(2명)</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명지학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	<p>학교발전기부금 법인회계 세입처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의2호 및 제9호에 따르면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과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은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2018. 11. 6. □□이(가) 학생증 카드시스템 유지 보수 목적으로 기부한 131,360천원을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하는 등 【붙임】 “학교발전기부금 법인회계 세입처리 현황”과 같이 2018.부터 2020. 5. 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이(가) 학생증 카드시스템 유지보수 목적으로 기부한 합계 257,247천원을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4명) ○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회계에서 세입 처리한 학교발전 기부금 합계 257,247천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기 바람

【붙임】

학교발전기부금 법인회계 세입처리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기부일자	기부자	기부금액	비 고
1	2018.11.6.	-	131,360	학생증 카드시스템 유지 보수
2	2020.5.29.		125,887	
합 계			257,247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명지학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4	<p>소송비용 확정 미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소송법」 제110조 1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세입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2018. 12. 28. △△이(가) 학교법인 명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ㄱ’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소송비용 16,500천원을 법인 회계에서 집행하였음에도 2021. 11. 감사일 현재까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3명)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ㄱ’ 소송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고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기 바람

【붙임】

소송비용 확정 미신청 현황

(단위 : 천원)

소 송 명	원 고	피 고	소 송 내 역	판 결 (판결일)	소 송 비 용 (변호사비용)
-	-	학교법인 명지학원	-	1심 : 원고 패 (2016.8.17.) 2심 : 원고 패 (2017.10.12.) 3심 : 원고 패 (2018.12.28.)	16,5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5	<p>임용 결격사유 및 성범죄경력 미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는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 ▷▷학과 교원 모집단위 응시자인 E을(를) 결격사유 조회결과 회신 없이 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붙임1】 “결격사유 조회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2학기까지 위 E 등 81명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결과 회신 없이 교원으로 임용한 사실이 있고, - 2018학년도 2학기 ▽▽학과 교원 모집단위 응시자인 F을(를) 성범죄경력 조회결과 회신 없이 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붙임2】 “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2학기까지 위 F 등 20명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없이 교원으로 임용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 결격사유 및 성범죄경력 미조회자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고 조회결과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붙임1】

결격사유 조회 미실시 현황

※ 생략

【붙임2】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6	<p>교원 복무규정 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르면 교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명지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출장은 공무출장과 기타출장으로 나뉘고, 동 규정 제12조 및 「명지대학교 교원 복무에 관한 내규」 제8조에 따르면 교원의 학기 중 기타출장은 1회 5일, 학기당 총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학과 H의 경우 2018년 1학기 학기 중 기타출장이 총 14일을 초과하는 등 【붙임】 “복무규정 위반 출장 현황”과 같이 2018. 4. 10.부터 2020. 12. 12. 까지 위 H 등 교원 15명은 18회에 걸쳐 1회 5일을 초과하거나 학기당 14일을 초과하는 등 명지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출장복무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기관경고

【붙임】

복무규정 위반 출장 현황

연번	소 속	직급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종류	출장일수 (휴일제외)	위반 사항
1	-	-	-	-	2018.04.10 ~ 2018.04.22	기타출장 (기타)	9	5일 초과
2	-	-	-	-	2018.04.22 ~ 2018.05.02	기타출장 (기타)	8	5일 초과
3	-	-	-	-	2018.03.09 ~ 2018.03.16	기타출장 (학회발표)	6	5일 초과
4	-	-	-	-	2018.03.06 ~ 2018.03.06	기타출장 (기타)	1	학기당 14일 초과
5	-	-	-	-	2018.03.09 ~ 2018.03.09	기타출장 (기타)	1	
6	-	-	-	-	2018.03.12 ~ 2018.03.12	기타출장 (기타)	1	
7	-	-	-	-	2018.03.20 ~ 2018.03.20	기타출장 (기타)	1	
8	-	-	-	-	2018.03.27 ~ 2018.03.27	기타출장 (기타)	1	
9	-	-	-	-	2018.03.27 ~ 2018.03.27	기타출장 (기타)	-	
10	-	-	-	-	2018.04.03 ~ 2018.04.03	기타출장 (기타)	1	
11	-	-	-	-	2018.04.09 ~ 2018.04.09	기타출장 (기타)	1	
12	-	-	-	-	2018.04.19 ~ 2018.04.19	기타출장 (기타)	1	
13	-	-	-	-	2018.04.24 ~ 2018.04.24	기타출장 (기타)	1	
14	-	-	-	-	2018.05.04 ~ 2018.05.04	기타출장 (기타)	1	
15	-	-	-	-	2018.05.09 ~ 2018.05.09	기타출장 (기타)	1	
16	-	-	-	-	2018.05.15 ~ 2018.05.15	기타출장 (기타)	1	
17	-	-	-	-	2018.05.16 ~ 2018.05.16	기타출장 (기타)	1	
18	-	-	-	-	2018.05.17 ~ 2018.05.17	기타출장 (기타)	1	
19	-	-	-	-	2018.05.18 ~ 2018.05.18	기타출장 (기타)	1	
20	-	-	-	-	2018.05.30 ~ 2018.05.30	기타출장 (기타)	1	
21	-	-	-	-	2018.06.01 ~ 2018.06.01	기타출장 (기타)	1	
22	-	-	-	-	2018.06.12 ~ 2018.06.12	기타출장 (기타)	1	
23	-	-	-	-	2018.10.02 ~ 2018.10.11	기타출장 (기타)	6	

연번	소 속	직급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종류	출장일수 (휴일제외)	위반 사항
24	-	-	-	-	2018.12.05 ~ 2018.12.12	기타출장 (기타)	6	5일 초과
25	-	-	-	-	2018.10.25 ~ 2018.11.04	기타출장 (학회발표)	7	5일 초과
26	-	-	-	-	2018.12.12 ~ 2018.12.19	기타출장 (기타)	6	5일 초과
27	-	-	-	-	2019.05.09 ~ 2019.05.18	기타출장 (기타)	7	5일 초과
28	-	-	-	-	2019.11.25 ~ 2019.12.02	기타출장 (학회발표)	6	5일 초과
29	-	-	-	-	2019.10.10 ~ 2019.10.17	기타출장 (기타)	6	5일 초과
30	-	-	-	-	2019.11.08 ~ 2019.11.15	기타출장 (학회발표)	6	5일 초과
31	-	-	-	-	2019.09.26 ~ 2019.10.04	기타출장 (기타)	6	5일 초과
32	-	-	-	-	2019.11.08 ~ 2019.11.16	기타출장 (학회발표)	6	5일 초과
33	-	-	-	-	2019.10.14 ~ 2019.10.21	기타출장 (학회발표)	6	5일 초과
34	-	-	-	-	2019.08.29 ~ 2019.09.09	기타출장 (학회발표)	6	5일 초과
35	-	-	-	-	2020.06.12 ~ 2020.06.19	기타출장 (기타)	6	5일 초과
36	-	-	-	-	2020.12.01 ~ 2020.12.12	기타출장 (기타)	9	5일 초과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7	<p>외부 심사위원 미위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제53조의5에 따라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따르면,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1 이상은 당해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자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2021. 2학기 ◇◇학과 채용심사과정에서 전공심사에 해당하는 2차 세미나 평가위원을 명지대학교 교직원으로만 구성하는 등 【붙임】 “전공심사 외부심사위원 미위촉 현황”과 같이 2018. 1학기부터 2021. 2학기까지 위 ◇◇학과 등 총 138개의 모집단위에 대한 전공심사를 실시하면서 외부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p>○ 경고(3명)</p>

【붙임】

전공심사 외부심사위원 미위촉 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8	<p>교원 미허가 겸직</p> <p>○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명지대학교 I은(는) 총장의 허가 없이 ♡♡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2015.3. ~ 2020.3.) 및 ♡♡ 비상임 이사(2020.1. ~현재)직을 겸하는 등 【붙임】 “미허가 겸직 현황” 과 같이 위 I 등 교수 6명은 총장의 허가 없이 ♡♡ 사외이사 등 외부 직무를 겸직한 사실이 있음</p>	<p>○ 경고(1명)</p> <p>○ 주의(5명)</p>

【붙임】

미허가 검직 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9	<p>근로기준법 위반한 취업규칙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2016년 특별연구지원비 및 특별학생 지도비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삭감하는 등 【붙임】 “과반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위 특별연구지원비 및 특별학생지도비 수당 삭감 등 총 7건의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주의

【붙임】

과반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현황

변경사항	변경시기	변경사항	동의 여부	미지급 보수액 (추정)
특별연구지원비 및 특별학생지도비 감액	2016학년도	전년대비 봉급 인상분 및 호봉 승급분의 100%만큼 수당 삭감	×	12.2억
	2017학년도	전년대비 봉급인상분 100%만큼 수당 삭감	×	22.4억
	2019학년도	전년대비 급여 인상분의 50%만큼 수당 삭감	×	26.5억
	2020학년도	전년대비 급여 인상분의 50%만큼 수당 삭감	×	32.9억
보수규정 변경	2017.12.27.	명지학원 보수규정 제3조 '봉급이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의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을 말한다'는 규정 후단으로 '단 대학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의 봉급표를 참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	×	-
연가보상비 제한	2016년	연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가보상비 미지급	×	-
시간외 수당 제한	2016년	시간외 수당을 최대 월 20시간으로 제한	×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0	<p>의원면직 제한 사유 조회 누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제61조2에 따르면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ㄹㄹ은(는) J(으)로부터 2018. 3. 1.자 의원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감사원·검찰청 등에 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여부 조회를 실시하지 않는 등 【붙임】 “의원면직 제한대상 조회 누락 현황”과 같이 2018. 3. 1. 부터 2021. 10. 1.까지 위 J 등 36명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사유 여부에 대한 조회를 누락한 채 의원면직 처리한 사실이 있음 	<p>○ 주의(3명)</p>

【붙임】

의원면직 제한대상 조회 누락 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1	<p>직원 임용 시 성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미조회</p> <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대학에는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고 되어있고, 「명지대학교 직원 인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 등 제1호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있고, 「명지대학교 계약직원에 관한 내규」 제7조에 따르면 계약직원의 임용제한은 「직원 인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고 되어있는데도,</p> <p>※ 성범죄 경력 조회의 경우 대학은 2018. 7. 17. 이후부터 적용</p> <p>- 명지대학교는 2018. 5. 1. K을(를) 일반직으로 신규 채용하면서 임용일로부터 255일 지난 후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는 등 【붙임】 “성범죄 경력 등 미(지연) 조회 현황”과 같이 2018.부터 2021. 11. 감사일 현재 까지 위 K 등 직원 247명(일반직 38명, 계약직 209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거나 임용일로부터 짧게는 7일부터 길게는 255일이 지난 후 성범죄 경력 등의 조회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p>	<p>○ 기관주의</p> <p>○ 통보</p> <p>- 성범죄 경력 등의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 관련 경력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p>

【붙임】

성범죄 경력 등 미(지연) 조회 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2	<p>기록물 폐기 절차 미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팀은 2018. 4. 24. ‘ㄴ’ 등 기록물 29종을 폐기하면서 자체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붙임】 “절차 미준수 기록물 폐기현황”과 같이 2018.부터 2021. 11. 감사일 현재까지 위 ☆☆팀 등 10개 부서는 자체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14차례에 걸쳐 총 550종의 기록물을 폐기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 기록물 폐기 시 관련 심사 및 심의를 거쳐 운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바람

【붙임】

절차 미준수 기록물 폐기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3	<p>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 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고, 「명지대학교 교직원복무규정」 제2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지시에 순응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고, 시간외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직원은 종합 전산망을 통하여 근무시간 종료 전 사무지원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L은(는) 2019. 3. 5. 18:40부터 20:15까지 ●●대학원 ㄷ 수강중으로 시간외 근무가 불가한데도 같은 날 19:00부터 22:00까지의 시간외 근무수당 33,000원을 수령하는 등 【붙임】 “대학원 수강 중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현황”과 같이 2019. 3.부터 2019. 11. 까지 위 L 등 명지대학교 직원 3명은 대학원 수강중으로 시간외 근무가 불가한데도 같은 날 동일(중복) 시간외 근무 총 10건에 대한 수당 합계 308,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2명) ○ 주의(1명) ○ 시정(회수) - 부당하게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 합계 308,00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붙임】

대학원 수강 중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4	<p>외부강의등 미신고</p> <p>○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20. 5. 27.~)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일시, 주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도,</p> <p>* 2020. 5. 27. 이전 : 사례금과 상관없이 사전 신고 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 신고</p> <p>【외부강의등 미신고】 -----①</p> <p>- 명지대학교 M은(는) 2018. 12. 17.부터 12. 18.까지 ■■에서 ‘ㄹ 강연’을 실시하고도 소속기관장에 신고하지 않는 등 【붙임1】 “외부강의등 미신고 현황”과 같이 2018. 3.부터 2021. 11. 감사일 현재까지 위 M 등 교원 17명은 총 39건의 외부강의등을 실시하고도 소속기관장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p>	<p style="text-align: center;"><①관련></p> <p>○ 경고(1명) ○ 주의(16명)</p> <p style="text-align: center;"><②관련></p> <p>○ 기관주의 ○ 통보</p> <p>- 향후 교직원들의 외부강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외부강의등 사례금 미신고】 -----②</p> <p>- H은(는) 2018. 4. 19. ▲▲에서 ‘□ 강의’를 실시하고 2021. 11. 감사일 현재까지 사례금 상세 명세 또는 총액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보완)하지 않는 등</p> <p>【붙임2】 “외부강의등 사례금 미신고(보완) 현황”과 같이 2018. 3.부터 2021. 11. 감사일 현재까지 위 H 등 교원 15명은 총 117건의 외부강의등을 실시하고 강의를 마친 날부터 2021. 11. 감사일 현재까지 사례금 상세 명세 또는 총액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보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붙임1】

외부강의등 미신고 현황

※ 생략

【붙임2】

외부강의등 사례금 미신고(보완) 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명지학원 및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5	<p>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p> <p>○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부동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교지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되나,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고 되어 있으며, 「학교법인 명지학원 정관」 제94조 제5항에 따르면 대학교에는 대학교교회를 두고, 교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p>	<p><①, ②관련></p> <p>【학교법인 명지학원】</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를 명확히 하고, 보고가 누락된 교육용 기본재산 등 보유 현황을 수정 보고 하기 바람</p> <p><③관련></p> <p>【명지대학교】</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여 ▶▶을(를) 대학교교회로 직접 운영하거나, 직접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인 건물 4개 동을 교육용으로</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해당재산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이사회 미(사후)심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 ----①</p> <p>-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1987. 10. 6.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서울특별시 ㄴ 소재 토지(32㎡)를 취득(1997. 4. 29. 사후 심의)하는 등 【붙임】 “▶▶ 관련 교육용 기본재산 현황” ‘비고’란 기재와 같이 1987. 부터 2011.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ㄴ 소재 토지(32㎡) 등 9개의 교육용 재산을 취득(미심의 3개, 사후 심의 6개)한 사실이 있음</p> <p>【재산현황 미보고 및 과오보고에 관한 사항】 -----②</p> <p>- 또한,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1994. 4. 28. 개최한 이사회에서 서울특별시 ㄴ 소재 토지(29㎡)를 명지대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심의·의결하고도 매년 교육용 기본재산 등 보유현황을 교육부에 보고하면서 해당 토지를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하는 등 【붙임】 “▶▶ 관련 교육용 기본재산 현황” ‘기본재산 현황 보고’란 기재와 같이 1994.부터 2021. 감사일 현재까지 위 ㄴ 소재 토지(29㎡) 등 4개의 교육용 재산에 대해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과 다른 학교의 재산으로 보고(2개)하거나, 보고를 누락(2개)한 사실이 있음</p> <p>【교육용기본재산 목적외 사용 등에 관한 사항】 ----③</p> <p>- 명지대학교는 1999. 8. 27. 개최된 이사회에서 ▶▶에서 기부받아 취득한(1999. 7. 19.) 서울특별시 ○ 소재</p>	<p>활용하고, 그간 ▶▶이(가) 해당 건물들을 사용한 기간 중 민법상 채권 시효 이내에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내부규정 등에 따라 적정 사용료를 산정, ▶▶(으)로부터 징수하고,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용계약을 체결해 사용료를 징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토지(308.4㎡) 및 건물(교육관, 925.75㎡)을 명지대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는데도 이를 용도대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용 계약 등도 체결하지 않은 채 위 ▶▶이(가) 꺾 등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2018년 재산세 및 종부세 합계 1,905,880원이 부과(재산세 등은 ▶▶에서 납부)되게 하는 등 【붙임】 “▶▶ 관련 교육용 기본재산 현황” ‘재산세 등 부과내역’란 기재와 같이 1994.부터 2021. 감사일 현재까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한 위 ○ 소재 토지(308.4㎡) 및 건물(교육관, 925.75㎡) 등 4개의 교육용 재산을 용도대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임대차 계약 등도 체결하지 않은 채 ▶▶이(가) 꺾 등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감사 대상 기간 중(2018.~2021.) 재산세 등 합계 30,555,344원이 부과되게 한 사실이 있음</p>	

【붙임】

▶▶ 관련 교육용 기본재산 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6	<p>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 완수 전 소유권 부당 이전</p> <p>○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38조 제2항, 43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의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되고, 법인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며, 교육부의 ‘학교법인 명지학원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 공문에 따르면 허가의 조건으로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않고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며,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 위반 또는 불이행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p> <p>- 명지대학교 N은(는) 2021. 5. 13. 학교법인 명지학원 및 명지대학교가 ▼▼와(과) 계약한 2개 필지(354㎡), 16개 필지(364,773㎡) 등 교육용 기본재산 총 18개 필지(365,127㎡)에 대한 매매계약을 추진하면서, ▼▼(으)로부터 계약서 상의 지정일자가 지나도록 계약금과 잔금을 납부받지도 않았고, 지정일자(2021. 5. 28.)</p>	<p>○ 중징계(해임, 1명)</p> <p>○ 경고(1명)</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이후인 2021. 8. 10. 위 토지 매매대금 합계 43,580백만원 중 2,000백만원만 교비회계로 납부(41,580백만원은 미납)받았음에도, 학교법인으로부터 미리 전달 받은 (2021. 6. 9.) 위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위임장과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측에 임의 교부하여 매각 대상 토지 18개 필지 중 ㄷ 토지를 제외한 17개 필지(237,863㎡)의 소유권이 위 ▼▼에 동일자로 이전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7	<p>징계위원회 수당 교비회계 집행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는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학교에 속하는 학교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 명지학원 정관」 제59조 제1항 및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2018. 8. 22. 학교법인 명지학원 소관인 교원징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회의일시 : 2018. 6. 28., 2018. 7. 24.) 합계 2,05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붙임】 “법인 소관 징계위원회 수당 교비회계 집행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감사일 현재 까지 위 학교법인 명지학원 소관인 징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총 8회, 금액 합계 18,35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6명) ○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징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합계 18,350천원을 법인 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기 바람

【붙임】

법인 소관 징계위원회 수당 교비회계 집행 현황

(단위 : 원)

연번	회의일시	내 용	지급인원	집행일	금 액	지출과목
1	2018.6.28./ 2018.7.24.	-	-	2018.8.22.	2,050,000	교원제수당
2	2018.12.26.	-	-	2019.1.14.	500,000	직원제수당
3	2018.12.27./ 2019.1.28.	-	-	2019.2.27.	3,200,000	교원제수당
4	2019.2.27./ 2019.3.27.	-	-	2019.4.12.	3,200,000	교원제수당
5	2019.4.2./ 2019.4.17.	-	-	2019.5.8.	400,000	직원제수당
6	2019.12.26./ 2020.1.16.	-	-	2020.2.12.	3,000,000	교원제수당
7	2020.7.7./ 2020.7.17.	-	-	2020.8.10.	3,200,000	교원제수당, 직원제수당, 기타운영비
8	2021.8.31./ 2021.9.10.	-	-	2021.9.17.	2,800,000	교원제수당, 직원제수당, 기타운영비
합 계					18,350,0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8	<p>임대료 보증금 계좌 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학교 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진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안내서(19.12.31.)」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은 기타 고정부채로서 별도 예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경우 교비회계 손실 및 불필요한 분쟁 등을 야기하므로 반드시 임대료, 관리비 등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2019. 2. 1.부터 2021. 1. 31.까지 인문 캠퍼스에 입주한 ◀◀(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0,000천원을 납부 받은 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지 않고 운영비 계좌로 관리하는 등 【붙임】 “학교시설 임대보증금 관리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9. 2.부터 2021. 11. 감사일 현재까지 위 ◀◀ 등 5개 업체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합계 95,040천원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지 않고 운영비 계좌로 관리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2명) ○ 통보 - 임대보증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기 바람

【붙임】

학교시설 임대보증금 관리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번	캠퍼스	임대업체명 (대표)	용 도	면적 (㎡)	임대차 기간	세입액		비 고
						임대보증금	관리계좌	
1	인문	-	-	1,018	2019. 2. 1. ~ 2021. 1.31.	20,000,000	-	-
2	자연	-	-	63	2020. 2. 1. ~ 2021. 1.31.	53,040,000		
3	자연	-	-	63	2020. 2. 1. ~ 2021.1.31.	2,000,000		
4	자연	-	-	4,840	2019. 3. 1. ~ 2024. 2.29.	10,000,000		
5		-			계약기간 미상	10,000,000		
합 계						95,040,0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9	<p>교내연구 수행 부적정</p> <p>【교내연구비 중복 수령】 -----①</p> <p>○ 「명지대학교 교내연구비 관리 규정(‘19.10.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사업별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연구 기간 내 지원부서장에게 연구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명지대학교 2020학년도 일반교원 연구비 지원사업 실시(‘20. 3. 20., 내부결재)’ 및 ‘2021학년도 전임(일반)교원 교내연구비 지원 사업 계획(‘21.3.17. 내부결재)’ 에 따르면 전임교원이 연구비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구기간은 1년이며, 교내연구비를 지원 받아 연구 중에 있는 교원은 신청이 제한된다고 되어 있으며, 연구비 지급은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및 내규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환수 조치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명지대학교 ○은(는) 2020. 3. 26. ‘ㄱ 연구’를 교내연구 과제로 교원일반연구비 4,000천원을 수령하고, 2021. 3. 22. 연구가 진행중인 위 연구과제의 연구계획서에 연도만 수정 제출한 후 교내연구비 400만원을 추가로 수령한 사실이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① 관련></p> <p>○ 경고(1명)</p> <p>○ 통보</p> <p>- 동일한 연구계획을 제출한 ○에 대하여 연구계획 변경 또는 환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center;"><② 관련></p> <p>○ 경고(3명)</p> <p>○ 주의(3명)</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연번	학기	신청일	연구과제명	연구시작	연구종료	금액	
1	2020-1	2020.03.26.	-	2020.04.01.	2021.03.31.	4,000	
2	2021-1	2021.03.22.	-	2021.04.01.	2022.03.31.	4,000	
<p>【연구결과물 미제출】 -----②</p>							
<p>○ 「명지대학교 교수연구년에 관한 규정(17.12.27.)」 제8조에 따르면 연구년 교원은 복귀 후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2년내에 연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다룬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교원은 차후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연구년 기간이 만료되고도 복귀하지 않거나 상기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연구년 기간 중 받은 보수 전액 또는 의무 불이행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명지대학교 교내연구비 관리 규정(19.10.1.)」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후 사업별로 제시된 기간 내 연구결과 보고서류 및 연구결과물을 지원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미 지급된 연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명지대학교 P은(는) 2019. 2. 28. 연구년 종료 후 연구 실적물 제출기한인 2021. 2. 28.까지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붙임】 “연구실적물 미제출 현황”과 같이 2021. 2. 28.부터 2021. 11. 감사일 현재까지 위 P 등 교원 6명은 위 연구년 실적물 등 6건에 대하여 제출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붙임】

연구실적물 미제출 현황

연번	학 과	직급	성명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제출 기한	초과일수 (2021.11.15. 감사일 기준)
						시작일	종료일		
1	-	-	-	연구년 과제	-	2018.03.01	2019.02.28.	2021.02.28	261
2	-	-	-	연구년 과제	-	2018.09.01	2019.02.28.	2021.02.28	261
3	-	-	-	연구년 과제	-	2018.09.01	2019.02.28.	2021.02.28	261
4	-	-	-	연구년 과제	-	2018.09.01	2019.08.31.	2021.08.31	77
5	-	-	-	연구년 과제	-	2019.03.01	2019.08.31.	2021.08.31	77
6	-	-	-	교내 연구비	-	2018.10.01	2019.09.30	2021.09.30	107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0	<p>타인 학위논문 활용 교내연구비 부담 수령</p> <p>○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 및 존중하여야 하고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명지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16.1.1.)」 제2조 및 「명지대학교 교원 복무에 관한 내규(15.11.1.)」 제2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관계법령과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고, 교원은 창의적인 연구에 지속적으로 정진하여야 하며 지적 정직성 유지 및 연구·생명 윤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명지대학교 2020학년도 일반 교원 연구비 지원사업 실시(20.3.20., 내부결재)’ 및 ‘2021학년도 전임(일반)교원 교내연구비 지원 사업 계획(21.3.17. 내부결재)’에 따르면 해당 사업목적은 교원의 연구의욕 고취와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대학의 연구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연구관련 지표 향상을 위한 것이고 전임교원의 연구계획서를 제출받아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명지대학교 교내연구비 관리 규정(15.3.1.)」 제17조 및 제22조와 「명지대학교 교내연구비 관리 내규(15.12.1.)」 제8조에 따르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p>	<p>○ 경징계(2명)</p> <p>○ 시정(회수)</p> <p>- 타인(제자 등)의 학위 논문을 요약한 후 교내연구 결과물로 제출한 당사자로부터 교내연구비 합계 6,000천원을 회수하여 관련회계로 세입조치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개발을 수행한 경우, 연구책임자가 연구윤리 위반결과물(중복게재, 자기표절, 데이터 위조, 변조 등)을 연구결과물로 제출하였을 경우 이미 지급된 연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명지대학교 Q은(는) 2019. 3. 25. ‘트 연구(연구기간 ‘19.4.1. ~ ‘20.3.31.)’라는 제목으로 교내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연구비 3,000천원을 지원받고, 본인이 지도교수로 참여한 대학원 ◆◆학과 석사과정생 R의 석사학위 논문인 ‘교’(2018.12.24. 논문심사)와 동일한 제목, 주제 및 내용으로 요약하여 2021. 4. 7. 학술지에 게재하고 교내 연구비 결과물로 제출하는 등 【붙임】 “제자 학위논문 활용 교내연구비 부당 수령 현황”과 같이 2019. 4. 1. 부터 2021. 4. 7.까지 위 Q 등 교원 2명은 위 연구 등 교내연구과제 2건을 신청하여 연구비 합계 6,000천원을 지원받고, 본인이 지도교수로 참여한 위 R 등 석·박사 과정 학생 2명의 학위논문을 요약하여 위 재무관리연구 등 2개의 학술지에 게재하고 교내 연구 결과물로 제출한 사실이 있음</p>	

【붙임】

타인 학위논문 활용 교내연구비 부당 수령 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1	<p>현장실습 점검 미 실시</p> <p>○ 「대 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17-115호, 2017.3.1.)」 제15조 제4항 및 「교육부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2017)」에 따르면 대학은 실습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지도(담당)교수 등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여야 하고, 현장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을 반드시 1회 이상 방문하여 실제 운영형태 및 여건 등과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습수행 태도 및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명지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제9조에 따르면 현장 실습지원센터에서는(이하“지원센터”이라 한다.) 현장실습 학기제 시행 계획 수립,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전반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고, 신규로 참여 하는 실습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전에 서면 또는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 기관이 화학물 및 유해 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생산 활동 등 이 실습 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중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명지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2019. 7. 1.부터 2019. 8. 9.(6주)까지 S이(가) ‘○○’에서 현장실습을 하였음 에도 현장 및 서면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붙임】 “LINC+사업 현장실습 점검 미 실시 현황”과 같이</p>	<p>○ 기관경고</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2019. 7. 1.부터 2021. 8. 25.까지 위 S 등 현장실습 학생 63명이 현장실습을 실시하였음에도 현장 및 서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붙임】

LINC+사업 현장실습 점검 미실시 현황

※ 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2	<p>인센티브 관련 평가 결과 미심의·미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에는 공정·투명하게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명지대학교 LINC+사업단 운영 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7조에 따르면 LINC+사업은 총장 직속기구로 LINC+사업추진위원회(이하 “사업추진위원회”) 및 LINC+사업단(이하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추진위원회는 LINC+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 총괄조직이며, 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 부위원장은 공과대학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 교육지원처장, 자연캠퍼스 학생경력개발처장, 산학협력단장, LINC+사업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LINC+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LINC+사업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T은(는) 2019. 2. 1. 본인에 대하여 평가 점수 ‘94점’, 평가등급 ‘S(최고등급)’를 부여한 후 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붙임】 “T 인센티브 관련 평가 미심의·미의결 현황”과 같이 2019. 2.부터 2021. 2.까지 위 T은(는) LINC+ 육성사업을 수행하면서 총 3회에 걸쳐 본인에 대하여 평가등급 ‘S’를 부여한 후 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1명) <p style="text-align: center;"><별도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관련기관) - 본인이 본인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T 인센티브 관련 평가 미심의 · 미의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연도	피평가자	평가자	평가점수	평가순위 (총피평가자수 -직원포함)	평가등급	수령액	수령일
1	2018	-	-	94.0	1위(13명)	S	2,500	2019.02.28.
2	2019	-	-	100.0	1위(22명)	S	2,970	2020.02.20.
3	2020	-	-	94.4	1위(20명)	S	3,816	2021.02.09.
합 계							9,286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3	<p>전문가 자문료 집행 부당</p> <p>○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9, '20.6.)」 제3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1.1.1.)」에 따르면 연구활동비로 전문가 활용비(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를 사용할 수 있고, 국내외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연구활동비 정산을 위한 제출서류는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계좌이체 증명서라고 되어 있는데도,</p> <p>- 명지대학교 U은(는) 2020. 10. 29. ‘ㅎ 연구’ 과제의 연구보조자로 참여하면서, 2020. 10. 25. ‘ㄱ’에 대한 자문 명목으로 본인의 배우자인 V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전문가 활용 업무 요청서(1차, 2020.9.21.~2020.10.23., 연구책임자 명의)를 작성하고, 실제로 본인이 자문의견서를 작성하고도 위 V(으)로부터 2020. 11. 9.부터 2020. 11. 20.까지 10일간 50시간 자문을 받은 것처럼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2020. 10. 29. 위 V에게 전문가 자문료 10,000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 “전문가 자문료 부당 집행 현황”</p>	<p>○ 경징계(1명)</p> <p style="text-align: center;"><별도조치></p> <p>○ 통보(▣▣부)</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과 같이 2020. 10. 29.부터 2021. 6. 29.까지 위 U은(는) 본인이 직접 자문의견서 등을 작성하고도 위 V(으)로부터 연구 시스템구축 자문 등 총 36차례 자문을 받은 것처럼 자문의견서 등을 작성·제출한 후 위 V에게 전문가 자문료 합계 34,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붙임】

전문가 자문료 부담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과 제 명	지원기관	과제번호	과제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기간	자문위원			자문내역	자문날짜 (횟수)	실제 작성자	지급일자	지급액	수령인 (은행명)
						소속	직위	성명						
1	-	-	202002060001	-	2020.09.30.~ 2020.12.20.	-	-	-	-	2020.10.12.~ 2020.10.23. (10회)	-	2020.10.29.	10,000	-
2	-	-	202002060001	-	2020.09.30.~ 2020.12.20.	-	-	-	-	2020.11.09.~ 2020.11.20. (10회)	-	2020.12.01.	10,000	-
3	-	-	20200104	-	2019.09.01.~ 2022.02.28. - 2차연도	-	-	-	-	2020.11.11. 2020.11.18. 2020.11.25. (3회)	-	2021.01.28.	2,400	-
4	-	-	20200104	-	2019.09.01.~ 2022.02.28. - 2차연도	-	-	-	-	2020.12.10. 2020.12.17. 2020.12.24. (3회)	-	2021.01.28.	2,400	-
5	-	-	20200104	-	2019.09.01.~ 2022.02.28. - 2차연도	-	-	-	-	2021.01.06. 2021.01.08. 2021.01.13. 2021.01.15. (4회)	-	2021.01.28.	3,200	-

연번	과 제 명	지원기관	과제번호	과제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기간	자문위원			자문내역	자문날짜 (횟수)	실제 작성자	지급일자	지급액	수령인 (은행명)
						소속	직위	성명						
6	-	-	202001040001	-	2019.09.01.~ 2022.02.28. -3차연도	-	-	-	-	2021.04.16. (1회)	-	2021.06.29.	1,000	-
7	-	-	202001040001	-	2019.09.01.~ 2022.02.28. -3차연도	-	-	-	-	2021.04.30. (1회)	-	2021.06.29.	1,000	-
8	-	-	202001040001	-	2019.09.01.~ 2022.02.28. -3차연도	-	-	-	-	2021.05.14. (1회)	-	2021.06.29.	1,000	-
9	-	-	202001040001	-	2019.09.01.~ 2022.02.28. -3차연도	-	-	-	-	2021.05.28. (1회)	-	2021.06.29.	1,000	-
10	-	-	202001040001	-	2019.09.01.~ 2022.02.28. -3차연도	-	-	-	-	2021.06.11. (1회)	-	2021.06.29.	1,000	-
11	-	-	202001040001	-	2019.09.01.~ 2022.02.28. -3차연도	-	-	-	-	2021.06.25. (1회)	-	2021.06.29.	1,000	-
합 계									36회			34,0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4	<p>외국인 학생 학적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출결사항 및 학점 이수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명지대학교 학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명지대학교 학칙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일반휴학 기간은 1회에 두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나, 1년 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명지대학교 외국인학생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 학생의 학적변동은 국제교류처장의 확인을 거쳐야 하고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소재불명된 자는 제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외국인 학생 W이(가) 2019. 9. 30. 휴학 후 1년 이상 복학하지 않고 소재불명 상태인데도 제적 여부 검토 없이 휴학생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 【붙임】 “외국인 학생 학적관리 부적정 현황”과 같이 휴학 후 1년 이상 복학하지 않고 소재불명 상태인 외국인 학생 28명에 대해 제적 여부 검토 없이 휴학생으로 학적을 관리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학 후 1년 이상 복학하지 않고 소재불명 상태인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붙임】

외국인 학생 학적관리 부적정 현황

연번	성명	학번	입학일자	국적	체류자격	체류만료일	휴학일	학적상태	비고
1	-	-	'17.08.28	-	-	'19.09.30	'19.09.30	일반휴학	소재불명
2	-	-	'18.09.03	-	-	'19.09.30	'19.09.30	일반휴학	소재불명
3	-	-	'17.08.28	-	-	'20.01.03	'19.09.30	일반휴학	소재불명
4	-	-	'18.09.03	-	-	'20.01.03	'19.09.30	일반휴학	소재불명
5	-	-	'18.09.03	-	-	'20.06.24	'20.03.30	일반휴학	소재불명
6	-	-	'19.03.04	-	-	'20.08.01	'20.03.30	일반휴학	소재불명
7	-	-	'19.09.02	-	-	'20.09.30	'20.09.14	일반휴학	소재불명
8	-	-	'18.03.02	-	-	'20.12.01	'20.09.28	일반휴학	소재불명
9	-	-	'20.03.02	-	-	'20.12.01	'20.09.14	일반휴학	소재불명
10	-	-	'19.03.04	-	-	'20.09.30	'20.09.28	일반휴학	소재불명
11	-	-	'19.09.02	-	-	'20.07.02	'20.03.30	일반휴학	소재불명
12	-	-	'19.03.04	-	-	'20.09.30	'20.09.14	일반휴학	소재불명
13	-	-	'19.09.02	-	-	'20.09.30	'20.09.28	일반휴학	소재불명
14	-	-	'20.03.02	-	-	'20.12.01	'20.09.14	일반휴학	소재불명
15	-	-	'19.09.02	-	-	'20.09.30	'20.09.14	일반휴학	소재불명
16	-	-	'19.09.02	-	-	'20.11.29	'20.09.28	일반휴학	소재불명
17	-	-	'19.09.02	-	-	'20.09.30	'20.09.14	일반휴학	소재불명
18	-	-	'20.03.02	-	-	'20.12.01	'20.09.28	일반휴학	소재불명
19	-	-	'19.09.02	-	-	'20.12.17	'20.11.03	일반휴학	소재불명
20	-	-	'19.03.04	-	-	'20.12.17	'20.11.03	일반휴학	소재불명
21	-	-	'19.09.02	-	-	'20.09.30	'20.09.28	일반휴학	소재불명
22	-	-	'19.03.04	-	-	'20.12.17	'20.11.03	일반휴학	소재불명
23	-	-	'19.09.02	-	-	'20.09.30	'20.09.28	일반휴학	소재불명
24	-	-	'20.03.02	-	-	'20.12.01	'20.09.14	일반휴학	소재불명
25	-	-	'20.03.02	-	-	'20.11.24	'20.09.14	일반휴학	소재불명
26	-	-	'20.03.02	-	-	'20.12.01	'20.09.14	일반휴학	소재불명
27	-	-	'19.09.02	-	-	'20.09.30	'20.09.14	일반휴학	소재불명
28	-	-	'19.09.02	-	-	'20.09.30	'20.09.28	일반휴학	소재불명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5	<p>전임교원 일반대학원 미허가 입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지대학교 학칙」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명지대학교의 전임교원은 각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수 없으나, 학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여야 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입학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학과 X은(는) 명지대학교에 재직하면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허가 없이 2015. 3. 2. 부터 2019. 2. 12.까지 본인이 소속된 ○○학과 일반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한 사실이 있음 	<p>○ 경고(1명)</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6	<p>조교 수업 진행 및 보강 미 실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르면 학점당 필요한 이수 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고, 「명지대학교 학칙」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하고, 「명지대학교 학칙 시행규칙」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르면 교·강사는 공무수행, 학회참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결강하여야 하며, 보강은 사전에 실시하여야 하고, 보강은 학사 지원팀과 요일, 시간, 장소를 협의하여 수강 학생들의 타 교과목 수강에 지장이 없도록 보강하며, 전자출결 시스템상 보강일 및 보강 시행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018~2019학년도 개강 안내’에 따르면 기본수업시간은 3학점의 경우 48시간, 2학점의 경우 64시간이고 개인사정에 의한 휴강은 필히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Y은(는) 2018. 9. 17. ‘ㄱ’ 과목에 대하여 해외 체류 기간(2018. 9. 17. ~ 9. 21.)에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서(보강예정일 : 2018. 9. 19., 보강시수 : 1시간)를 제출하고 위 과목 수업을 조교에게 진행하게 하는 등 【붙임1】 “담당 교과목 조교 수업 진행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위 Y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17명) ○ 통보 - 수업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교원 11명은 위 'ㄱ' 과목 등 11개 교과목, 총 46.5시수 수업을 조교가 진행하게 한 사실이 있고,</p> <p>- 또한, 위 Y은(는) 2019. 6. 19. 'ㄱ' 과목에 대하여 개인사유로 결강한 수업에 대하여 보강을 실시하지 않는 등 【붙임2】 “결강에 따른 보강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위 Y 등 교원 7명이 강의시수 합계 33시간에 대해 개인사유 등으로 실제 보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붙임1】

담당 교과목 조교 수업 진행 현황

연도	학기	학 과	직	성명	과목명	결강일	결강 사유	결강 시수	보강계획 제출일	보강계획 승인여부	보강일자	출국일	입국일			
2018	2	-	-	-	-	2018-09-17	-	1	2018-09-10	○	2018-09-17	2018-09-16	2018-09-21			
2018	2					2018-09-18	-	2	2018-09-10	○	2018-09-18	2018-09-16	2018-09-21			
2018	2					2018-09-19	-	2	2018-09-10	○	2018-09-19	2018-09-16	2018-09-21			
2018	2					2018-09-20	-	1	2018-09-10	○	2018-09-20	2018-09-16	2018-09-21			
2019	2				-	-	-	-	2019-10-21	-	1	2019-09-25	○	2019-10-21	2019-10-21	2019-10-25
2019	2								2019-10-22	-	2	2019-09-25	○	2019-10-22	2019-10-21	2019-10-25
2019	2								2019-10-23	-	2	2019-09-25	○	2019-10-23	2019-10-21	2019-10-25
2019	2								2019-10-24	-	1	2019-09-25	○	2019-10-24	2019-10-21	2019-10-25
2019	1	-	-	-	-	2019-05-22	-	2	2019-05-10	○	2019-05-22	2019-05-17	2019-05-22			
2019	1					2019-05-22	-	2	2019-05-10	○	2019-05-22	2019-05-17	2019-05-22			
2018	1	-	-	-	-	2018-03-29	-	3	2018-03-19	○	2018-03-29	2018-03-29	2018-03-31			
2018	2					2018-09-20	-	1.5			2018-09-20	2018-09-20	2018-09-24			
2019	1	-	-	-	-	2019-03-18	-	2	2019-03-15	○	2019-03-18	2019-03-18	2019-03-21			
2019	1					2019-03-20	-	1	2019-03-15	○	2019-03-20	2019-03-18	2019-03-21			
2018	1	-	-	-	-	2018-05-03	-	2	2018-04-24	○	2018-05-03	2018-05-03	2018-05-05			
2018	1					2018-05-04	-	2	2018-04-24	○	2018-05-04	2018-05-03	2018-05-05			
2018	1	-	-	-	-	2018-05-09	-	1	2018-04-25	○	2018-05-09	2018-05-08	2018-05-14			
2018	2					2018-11-29	-	4	2018-11-19	○	2018-11-29	2018-11-24	2018-12-01			
2018	2	-	-	-	-	2018-11-21	-	4	2018-11-07	○	2018-11-21	2018-11-18	2018-11-21			
2018	2					2018-09-28	-	4	2018-09-20	○	2018-09-28	2018-09-26	2018-09-29			
2018	2	-	-	-	-	2018-09-27	-	2	2018-09-20	○	2018-09-27	2018-09-26	2018-09-29			
2019	2					2019-09-26	-	4	2019-09-11		2019-09-26	2019-09-26	2019-09-28			
합 계								46.5								

【붙임2】

결강에 따른 보강 미실시 현황

연도	학기	학과	직	성명	과목명	결강일	결강 사유	결강 시수	보강계획 제출일	보강계획 승인여부	보강일자	출국일	입국일	비 고	
2019	1	-	-	-	-	2019-06-19	-	1	2019-06-10	○		2019-06-16	2019-06-21	보강 미실시 (15주 수업 완료)	
2018	2	-	-	-	-	2018-12-06	-	3				2018-12-04	2018-12-09	보강 미실시 (15주 수업 완료)	
2019	1	-	-	-	-	2019-03-25	-	1.5	2019-03-08		2019-03-24	2019-03-23	2019-03-30		
2019	1				-	2019-03-25	-	1.5	2019-03-08		2019-03-24	2019-03-23	2019-03-30		
2019	1				-	2019-03-26	-	1.5	2019-03-08		2019-03-24	2019-03-23	2019-03-30		
2019	1				-	2019-03-27	-	1.5	2019-03-08		2019-03-24	2019-03-23	2019-03-30		
2019	1				-	2019-03-27	-	1.5	2019-03-08		2019-03-24	2019-03-23	2019-03-30		
2019	1				-	2019-03-28	-	1.5	2019-03-08		2019-03-24	2019-03-23	2019-03-30		
2019	1				-	2019-05-28	-	1.5			2019-06-04	2019-05-28	2019-05-30		
2019	1				-	2019-05-29	-	1.5			2019-06-04	2019-05-28	2019-05-30		
2019	1				-	2019-05-29	-	1.5			2019-06-04	2019-05-28	2019-05-30		
2019	1				-	2019-05-30	-	1.5			2019-06-04	2019-05-28	2019-05-30		
2018	1				-	-	-	-	2018-06-18	-	5	2018-05-30	○		2018-06-16
2019	1	-	-	-	-	2019-03-12	-	1.5	2019-02-26	○		2019-03-07	2019-03-13	보강 미실시 (15주 수업 완료)	
2018	1	-	-	-	-	2018-06-19	-	2				2018-06-15	2018-06-20	보강 미실시 (15주 수업 완료)	
2018	1				-	2018-06-19	-	1.5					2018-06-15	2018-06-20	보강 미실시 (15주 수업 완료)
2018	1				-	2018-06-19	-	3					2018-06-15	2018-06-20	보강 미실시 (15주 수업 완료)
2019	1	-	-	-	-	2019-06-20	-	1				2019-06-20	2019-06-23	보강 미실시 (15주 수업 완료)	
합 계								33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7	<p>재수강 과목 성적 부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지대학교 학칙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재수강은 이전에 수강한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고, 교과과정 개편 등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은 각 단과대학장이 인정한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성적이 C+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고, 재수강시 취득 가능 최고 성적은 B+(2017학년도 입학자까지는 A0)로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재수강 신청 학생에 대한 수강시스템 성적 상한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 2018학년도 1학기 “ㄷ” 교과목을 재수강한 Z 학생이 재수강 성적 A+ (상한 A0)을 부여받는 등 【붙임】 “재수강 교과 성적 상한 미조치 성적 부여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 부터 2020학년도 2학기까지 수강시스템 성적 부여 상한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 위 Z 등 학생 7명이 재수강한 과목 성적이 취득 가능 최고 성적 기준을 초과하여 A0~A+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통보 - 재수강생에 대한 성적 상한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 취득 가능 최고 성적 기준을 초과하여 부여받은 재수강 교과 성적에 대해 학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기 바람

【붙임】

재수강 교과 성적 상한 미조치 성적 부여 현황

연번	학기	소 속	직	성 명	교과목명(학점)	학 과	학 번	학생 명	원성적	재수강 성적
1	2018-1	-	-	-	-	-	-	-	C+	A+
2	2019-1	-	-	-	-	-	-	-	C+	A0
3	2019-1	-	-	-	-	-	-	-	F	A+
4	2019-1	-	-	-	-	-	-	-	B+	A0
5	2020-2	-	-	-	-	-	-	-	F	A+
6	2020-2	-	-	-	-	-	-	-	F	A+
7	2020-2	-	-	-	-	-	-	-	F	A+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8	<p>장학금 초과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명지대학교 장학규정」 제4조에 따르면 교내 장학생은 매 학기 초에 학기 단위로 선정하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고, 「명지대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별표1] 교내장학금 수혜 자격 기준에 따르면 소정의 과정을 통해 선발된 어학연수, 교육연수자에게 지급하는 연수장학금(2종)은 최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2018. 4. 25. “ㄱ” 연수장학금을 지급하면서 AA에게 연수장학금(2종) 상한액(2,000천원)보다 1,500천원을 초과한 3,500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 “연수장학금(2종) 초과 지급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위 AA 등 학생 180명에게 연수장학금(2종) 상한액보다 적게는 940천원에서 많게는 1,500천원까지 합계 239,600천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주의 ○ 통보 - 규정 등에 맞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바람

【붙임】

연수장학금(2종) 초과 지급 현황

(단위 : 원)

연번	년도	학기	학 과	학년	학 번	성 명	장학금 지급 현황		
							상한액	실 지급액	초과 지급액
1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2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3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4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5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6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7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8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9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10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11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12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13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14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15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16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17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18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19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20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21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22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23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24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25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26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27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28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29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30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31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32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33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34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35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36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37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38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39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40	2018	1	-	-	-	-	2,000,000	3,500,000	1,500,000

연번	년도	학기	학 과	학년	학 번	성 명	장학금 지급 현황		
							상한액	실 지급액	초과 지급액
41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42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43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44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45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46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47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48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49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50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51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52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53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54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55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56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57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58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59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60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61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62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63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64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65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66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67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68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69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70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71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72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73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74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75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76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77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78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79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80	2018	2	-	-	-	-	2,000,000	3,390,000	1,390,000
81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82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83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84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85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연번	년도	학기	학 과	학년	학 번	성 명	장학금 지급 현황		
							상한액	실 지급액	초과 지급액
86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87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88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89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90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91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92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93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94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95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96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97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98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99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00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01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02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03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04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05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06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07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08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09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10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11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12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13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14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15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16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17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18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19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20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21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22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23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24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25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26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27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28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29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30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연번	년도	학기	학 과	학년	학 번	성 명	장학금 지급 현황		
							상한액	실 지급액	초과 지급액
131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32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33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34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35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36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37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38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39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40	2019	1	-	-	-	-	2,000,000	3,440,000	1,440,000
141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42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43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44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45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46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47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48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49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50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51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52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53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54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55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56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57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58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59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60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61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62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63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64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65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66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67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68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69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70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71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72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73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74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75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연번	년도	학기	학 과	학년	학 번	성 명	장학금 지급 현황		
							상한액	실 지급액	초과 지급액
176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77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78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79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180	2019	2	-	-	-	-	2,000,000	2,940,000	940,000
합 계							360,000,000	599,600,000	239,600,0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9	<p>출석기준 미충족자 성적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지대학교 학칙」 제46조 및 「명지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95조에 따르면 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결 상황, 학습 태도 및 성적분포 등을 고려하여 담당 교수가 평가하고, 성적은 해당 학기 중 5분의 4 이상을 출석한 자에 한하여 해당 교과목 성적을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AB은(는) 2018학년도 1학기 '▣▣ 과목 수업시수 48시간 중 27시간을 결석한 AC)에게 'A+'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붙임】 “출석기준 미충족자 학점 부여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1학기까지 위 AB 등 교원 25명은 위 AC 등 학기 수업시수의 5분의 4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 32명에게 'D0'에서 'A+'까지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25명) ○ 통보 - 출석기준 미충족 학생 32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학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붙임】

출석기준 미충족자 성적 부여 현황

연번	학기	소속	직	성명	교과명 (학점)	학생학 번	학생명	총 시수	출석 기준 시수	출석 시수	부여 학점
1	2018-1	-	-	-	-	-	-	48	38.4	21	A+
2	2018-1	-	-	-	-	-	-	48	38.4	12	A0
3	2018-1	-	-	-	-	-	-	48	38.4	3	D+
4	2018-1	-	-	-	-	-	-	48	38.4	21	D+
5	2018-1	-	-	-	-	-	-	48	38.4	25	D+
6	2018-1	-	-	-	-	-	-	48	38.4	21	B+
7	2018-1	-	-	-	-	-	-	48	38.4	18	D0
8	2018-1	-	-	-	-	-	-	32	25.6	20	D+
9	2018-1	-	-	-	-	-	-	48	38.4	30	C0
10	2018-1	-	-	-	-	-	-	48	38.4	27	C+
11	2018-2	-	-	-	-	-	-	48	38.4	27	C+
12	2018-2	-	-	-	-	-	-	48	38.4	27	C+
13	2018-2	-	-	-	-	-	-	48	38.4	6	C0
14	2018-2	-	-	-	-	-	-	48	38.4	19.5	C0
15	2018-2	-	-	-	-	-	-	48	38.4	14.5	D+
16	2018-2	-	-	-	-	-	-	48	38.4	31.5	D+
17	2018-2	-	-	-	-	-	-	48	38.4	21	C0
18	2018-2	-	-	-	-	-	-	48	38.4	3	B+
19	2018-2	-	-	-	-	-	-	48	38.4	27	C0
20	2018-2	-	-	-	-	-	-	48	38.4	21	D0
21	2019-1	-	-	-	-	-	-	48	38.4	30	B0
22	2019-1	-	-	-	-	-	-	48	38.4	22.5	C0
23	2019-1	-	-	-	-	-	-	48	38.4	30	C+
24	2019-1	-	-	-	-	-	-	48	38.4	28.5	B0

연번	학기	소속	직	성명	교과명 (학점)	학생학 번	학생명	총 시수	출석 기준 시수	출석 시수	부여 학점
25	2019-1	-	-	-	-	-	-	48	38.4	27	C0
26	2019-1	-	-	-	-	-	-	48	38.4	24	C0
27	2019-1	-	-	-	-	-	-	48	38.4	15	C+
28	2019-1	-	-	-	-	-	-	48	38.4	9	C0
29	2020-1	-	-	-	-	-	-	45	36	18	C+
30	2020-1	-	-	-	-	-	-	90	72	55	B+
31	2020-2	-	-	-	-	-	-	45	36	27	D+
32	2020-2	-	-	-	-	-	-	45	36	24	B+
33	2021-1	-	-	-	-	-	-	30	24	6	C+
34	2021-1	-	-	-	-	-	-	30	24	16	C0
35	2021-1	-	-	-	-	-	-	45	36	23	C+
36	2021-1	-	-	-	-	-	-	45	36	19	D0
37	2021-1	-	-	-	-	-	-	45	36	6	D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0	<p>시설공사 착공서류 미수령</p> <p>○ 「명지대학교 물품구매규정」 제16조에 따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는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 관계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및 「명지대학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고, 착공 시에는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에정공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착공전 현장사진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주자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명지대학교는 2018. 5. 23. ●●와(과) 계약한 “쓰 공사” (계약금액 77,000천원, 공사기간 ‘18.5.23.~’18.6.22.)를 착공하면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및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계약상대자에게 착공계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등</p> <p>【붙임】 “시설공사 착공계 미수령 현황”과 같이 2018. 5.부터 2021. 8.까지 위 “쓰 공사” 등 총 16건(계약금액 합계 2,898,791천원)의 공사를 착공하면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및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등이 포</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기 전 기술자 지정신고서 등이 포함된 착공 신고서를 제출받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함된 착공신고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계약상대자에게 착공계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붙임】

시설공사 착공계 미수령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공 사 명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 (예정)일	공사업체 (대표자명)	공사 담당자
1	자연캠퍼스	-	77,000	2018.5.23.	2018.5.23.	2018.6.22.	-	-
2	자연캠퍼스	-	62,480	2018.5.23.	2018.5.23.	2018.7.7.	-	-
3	자연캠퍼스	-	84,300	2018.7.12.	2018.7.23.	2018.8.19.	-	-
4	자연캠퍼스	-	119,449	2018.7.27.	2018.7.16.	2018.8.5.	-	-
5	자연캠퍼스	-	240,000	2018.9.21.	2018.9.28.	2018.11.11.	-	-
6	자연캠퍼스	-	1,084,600	2018.10.8.	2018.10.15.	2018.11.12.	-	-
7	자연캠퍼스	-	327,470	2019.1.10.	2019.1.10.	2019.2.22.	-	-
8	인문캠퍼스	-	79,909	2019.1.16.	2019.1.16.	2019.2.13.	-	-
9	자연캠퍼스	-	75,130	2020.1.3.	2020.1.6.	2020.1.31.	-	-
10	인문캠퍼스	-	65,923	2020.2.3.	2020.2.3.	2020.2.21.	-	-
11	자연캠퍼스	-	310,000	2020.5.28.	2020.6.1.	2020.8.24.	-	-
12	인문캠퍼스	-	68,750	2020.8.4.	2020.8.10.	2020.8.28.	-	-
13	인문캠퍼스	-	83,820	2020.8.14.	2020.9.28.	2020.10.27.	-	-
14	자연캠퍼스	-	70,620	2021.4.28.	2021.5.3.	2021.5.31.	-	-
15	인문캠퍼스	-	71,350	2021.8.10.	2021.8.11.	2021.8.23.	-	-
16	인문캠퍼스	-	77,990	2021.8.23.	2021.8.30.	2021.9.18.	-	-
합 계			2,595,011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1	<p>관할청 미신고 건축물 설치</p> <p>○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명지대학교는 미상일로부터 2021. 11. 감사일 현재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정문 경비실’을 설치하여 경비실로 사용하는 등 【붙임】 “관할청 미신고 건축물 설치현황”과 같이 미상일로부터 2021. 11. 감사일 현재까지 위 정문 경비실 등 건축물 총 8개동(연면적 합계 2452.3m)을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여 경비실 및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p>	<p>○ 기관경고</p> <p>○ 통보</p> <p>- 관할청 신고 없이 설치한 가설건축물 8개동에 대해 법령 등 규정에 맞게 조치하기 바람</p>

【붙임】

관할청 미신고 건축물 설치현황

(단위 : 동, m, m²)

연번	위 치	수량	규격	면적	용 도	설치년도	관리부서
1	-	1	8×8	226.0	경 비 실	미상	-
2	-	1	10×3	34.0	창 고	미상	-
3	-	1	50×16	878.0	지붕(방수용)	2007	-
4	-	1	21×9	190.0	사무실,처리장	미상	-
5	-	1	27×7	174.8	사무실,식당	미상	-
6	-	2	27×8	373.8	분리수거장	미상	-
7	-	4	10×5	101.0	사무실, 창고	미상	-
8	-	1	46×11	474.7	창 고	2011	-
합 계		12		2,452.3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2	<p>물품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9조 및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물품관리자는 물품출납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물품출납원에게 그 출납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명지대학교 물품관리규정」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물품운용책임자는 학부장, 학과주임교수 및 행정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물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물품사용자는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자로서 분실, 도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1차적인 변상책임을 가지고, 물품이 사용 중 도난, 분실, 파손된 경우 물품운용책임자는 즉시 물품손실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 AD은(는) 2017. 2. 20. 취득한 '노트북(취득가액 770천원, 규격 iPad Air 2 64GB)'을 미상일에 손실하고도 물품손실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지 않는 등 【붙임】 "물품 손실 현황"과 같이 위 AD 등 2명은 위 '노트북' 등 총 2점(취득가액 합계 1,602천원)을 손실했음에도 물품손실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2명) ○ 통보 - 물품을 손실 또는 망실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붙임】

물품 손실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물품명	모델규격	취득일	취득가액	관련학과	물품 사용자	분실일 (추정)	회계
1	인문캠퍼스	노트북	-	2017.2.20.	770	-	-	2020.3.	교비
2	인문캠퍼스	노트북	-	2017.9.11.	832	-	-	2020.3.	교비
합 계					1,602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3	<p>시설공사 법정경비 미정산</p> <p>○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9호,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명지대학교는 2018. 10. 8. ◻◻와(과) 계약한 “ㄷ 공사 (계약금액 1,093,730천원, 공사기간 ‘18.10.15. ~ ‘18.11.12.)”의 준공일(‘18. 11.12.)에 제출된 준공서류를 검토하면서 미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00천원을 감액·정산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준공금액으로 확정하는 등</p> <p>【붙임】 “시설공사 법정경비 미정산 현황”과 같이 2018. 11.부터 2021. 2.까지 위 “ㄷ 공사” 등 총 4건(계약금액</p>	<p>○ 경고(2명)</p> <p>○ 주의(3명)</p> <p>○ 시정(회수)</p> <p>- 감액·정산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합계 3427천원을 시공업체(4개)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합계 1,768,315천원)의 시설공사 준공서류를 검토하면서 미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경비 합계 3,427천원을 감액·정산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준공 금액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음</p>	

【붙임】

시설공사 법정경비 미정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착공일~준공일) (계약일)	계약금액	구분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국민 건강 보험료	국민 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미정산액 (환수액*)	공사업체 (대표자명)	정산 관련자 (팀장/ 담당자)
1	-	1,093,730	준공시 인정금액	9,406	0	0	0	600	-	-
			감사 인정금액	8,806	0	0	0			
			미정산금액	600	0	0	0			
2	-	318,065	준공시 인정금액	7,702	0	0	0	950	-	-
			감사 인정금액	6,752	0	0	0			
			미정산금액	950	0	0	0			
3	-	98,900	준공시 인정금액	2,453	0	0	0	877	-	-
			감사 인정금액	1,576	0	0	0			
			미정산금액	877	0	0	0			
4	-	257,620	준공시 인정금액	6,285	824	1,081	95	1,000	-	-
			감사 인정금액	6,285	412	541	47			
			미정산금액	0	412	540	48			
합계		1,768,315	준공시 인정금액	25,846	824	1,081	95	3,427		
			감사 인정금액	23,419	412	541	47			
			미정산금액	2,427	412	540	48			

* 순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명지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4	<p>시설공사 준공처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사계약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해서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명지대학교 검수 규정」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2조에 따르면 시설공사의 검수는 전문직 검수자가 검수하고, 서류내용과 상이한 경우 검수를 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명지대학교는 2018. 8. 17. ■■■와(과) 계약한 “ㄱㄱ 공사”(계약금액 94,600천원, 공사기간 ‘19.2.13.~’19.2.22.)를 2019. 8. 19. 준공하면서 설계도서에는 방우형 콘센트가 아닌 일반형 콘센트를 설치하였는데도 감액·정산 또는 시공보완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처리하는 등 【붙임】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9. 8.부터 2021. 6.까지 위 “ㄱㄱ 공사” 등 공사 3건(계약금액 합계 40,311,692천원)을 준공하면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공정 총 5건(약 1,673천원 상당)에 대하여 감액·정산 또는 시공보완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3명) ○ 주의(2명) ○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시공된 공사비 합계 1,673천원 상당 공사비에 대해 시공업체(3개) 로부터 재시공 또는 환수 조치 하기 바람

【붙임】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 상대방	공종구분	시공 내역				조치 계획	담당자 (검사자)
	공사기간				당초설계	실제시공	부적정 내역	금액*		
-	'18.8.17. ~ '19.6.22. ~ '19.8.19.	94,600	-	-	매입-접지형 250V 2구 콘센트 (방우형)	매입-접지형 250V 2구 콘센트 (일반형)	시공 부적정	105	재시공 또는 환수	-
-	'18.11.29. ~ '19.1.10. ~ '21.6.30.	40,203,100	-	-	에폭시 코팅 (바닥) (3,417㎡)	에폭시 코팅 (바닥) (3,197㎡)	미시공	1,466	재시공 또는 환수	-
-					기계실 관보온 (25T*D100) (220M)	기계실 관보온 (25T*D100) (200M)	시공 부적정			
-					디자인 그레이팅 (375M)	디자인 그레이팅 (374M)	미시공			
-	'20.1.22. ~ '20.1.22. ~ '20.1.30.	13,992	-	-	걸레받이 도장 (3회)	걸레받이 도장 (2회)	시공 부적정	102	재시공 또는 환수	-
합 계		40,311,692						1,673		

* 순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